

2. 自然公園法施行規則中改正(案)

建設部令法令 第125號 1990. 8. 25 公布.

법령안입법예고

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1. 개정목적

- 여가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국립공원 탐방객수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, 현행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의 층수 및 건폐율은 1978년4월에 정해진 뒤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강하게 규제되고 있어 신규투자가 부진하여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더러 불법시설물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층수 및 건폐율을 완화하고
- 자연환경지구내 공원시설에 대한 시

설기준이 없어 집단시설지구내의 시설과 형평이 맞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기준을 신설코자 함.

- 현행 국립공원 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집단시설지구내 공원시설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신설
- 현행 일반 건축물의 층수기준은 2층 이하, 건폐율은 용도지구에 따라 20~50%로 되어 있으나,
- 앞으로는 일반건축물의 층수를 3층까지로 완화하고, 용도지구에 따라 20~50%로 되어 있는 건폐율을 10

%씩 상향 조정함.

나. 자연환경지구내 공원시설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신설

- 자연환경지구내에서도 숙박시설등의 공원시설이 가능하나, 층수 및 건폐율 기준이 없으므로
- 자연환경지구내의 공원시설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을 신설하여 건폐율은 20%이하 높이는 3층 이하로 정함.

다. 국립공원 입장료 결정의 위임.

- 현행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에서 국립공원입장료를 직접 정하고 있으나,
- 앞으로는 2,000원을 넘지 않는 한

도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행 관리하는 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규정으로, 도지사가 대행관리하는 공원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9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자연공원과장 전화 500-2844~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과 주소